

부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가단15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나4356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가단15627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변 론 종 결 2021. 12. 24.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위 C, D 사이의 별지 증여 내역 일람표 기재 각 증여일자의 증여계약을 133,591,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5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 및 그 중 39,4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부인 C와 E을 상대로 투자손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나57295호)에서 2020. 5. 14. ‘C와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5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의 모친이자 E의 장모이고, D은 C의 남동생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 피고는 C와 E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불법행위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한 후 자신의 금융계좌로 별지 증여 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돈 39,400,000원을 포함하여 C로부터 84,634,000원을, D으로부터 76,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
- 원고는 C와 E에 대하여 앞서 본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와 D이 별지 증여 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와 D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C가 피고에게 위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133,591,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하고자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C와 E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불법행위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로 원고로부터 39,400,000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 39,400,000원을 C, E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은 2014. 5. 25.부터 2015. 4. 29.까지, 피고와 D 사이의 증여계약은 2014. 11. 3.부터 2015. 11. 16.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 5. 28. ‘피고와 C 사이의 2019. 8. 19. 체결한 70,000,000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 8. 6. ‘피고와 C 사이의 2014. 5. 25.부터 2015. 4. 29.까지의 증여계약, 피고와 D 사이의 2014. 11. 3.부터 2015. 11. 16.까지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한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2021. 3. 2.자 회신(15쪽)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9. 피고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900,000원과 33,500,000원 합계 39,4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가 2015. 5. 20. D에게 39,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소위 G e머니를 구입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가 C와 E의 사기 등 범행에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와 E에게 불법행위를 위한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그들의 불법행위에 가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

별지 증여 내역 일람표			
입금자 : C		입금자 : D	비고
증여일자	금액(원)	금액(원)	
20140525	1,500,000		각 피고 B F은행 계좌로 입금
20140723	1,000,000		
20140725	2,500,000		
20140826	1,000,000		
20140902	1,240,000		
20141028	2,494,000		
20141103		34,400,000	
20141125	2,200,000		
20141226	4,000,000	3,000,000	
20141230	17,500,000	3,900,000	
		3,000,000	
20150123	7,000,000		
20150225	6,700,000		
20150316		4,000,000	
20150405	28,000,000		
20150413	2,500,000		
20150427		1,200,000	
20150429	7,000,000		
20150526		3,000,000	
20150626		1,000,000	
20150627		6,000,000	
20150727		2,000,000	
20151026		13,000,000	
20151116		1,500,000	
소계	84,634,000	76,000,000	
합계	160,634,000		

